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네이버주식회사 제19기(2017.1.1~2017.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 홀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 제19기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 의결사항 :

- 제1호 의안 : 제19기(201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참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별첨2 참조]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별첨3 참조]
 -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별첨4 참조]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별첨5 참조]

4.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상법 시행령 제31조 5항, 당사 정관 제25조 2항 및 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으며, 정기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1588-383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성 숙

[별첨 1]

□ 정관 일부 변경 세부내역

현행	변경	비고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0. (생략) 21. 전 각 항에 관련된 제반사업 및 투자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0. (생략) 21. 별정통신사업 22. 전 각 항에 관련된 제반사업 및 투자	- 클로바 사업 목적상 음성통화기능 탑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 21 조에 따라 법인의 정관 및 이용약관 등에 '별정통신사업자' 사업 목적 표기 필요
제 37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7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이사 개인별 탄력적인 임기 적용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 사내이사 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비고
최인혁 (1971.11.02)	-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석사 - 삼성 SDS - (現) 네이버 비즈니스위원회 리더 - (現) 해피빈재단 대표	이사회	없음	-	사내이사

[별첨 3]

□ 사외이사 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비고
이인무 (1966.06.23)	-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 - 고려대 경영대학, 싱가포르 국립대 부교수 - Dimensional Fund Advisors 부사장 - (現)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영공학부장 - (現)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원 자문위원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 회	없음	-	감사위원

[별첨 4]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비고
이인무 (1966.06.23)	-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 - 고려대 경영대학, 싱가포르 국립대 부교수 - Dimensional Fund Advisors 부사장 - (現)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영공학부장 - (現)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원 자문위원	이사회	없음	-	사외이사

[별첨 5]

□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세부내역

현행	변경	비고
<p>제 2 조(적용범위)</p> <p>① 본 규정은 회사 내 이사 이상의 모든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p> <p>②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라 함은 대표이사과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글로벌인사위원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③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p>	<p>제 2 조(적용범위)</p> <p>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p>	<p>- 임원제도 폐지에 따른 퇴직금지급 규정 적용 범위 변경</p>
<p>제 5 조(평균임금)</p> <p>임원의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기본급여총액을 3등분 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등분 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p>	<p>제 5 조(평균임금)</p> <p>① 임원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간의 기본급여총액을 3등분 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등분 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p> <p>②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상여금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로서 해당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이 명시된 지급금으로 한정한다.</p>	<p>- 상여금에 대한 정의 추가</p>
<p>제 10 조(퇴직금 승계)</p> <p>① 임원의 관계회사로의 전출로 인한 퇴직 시, 전출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전입회사에 인(승)계하고 최종회사가 일괄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한다.</p> <p>② 승계대상이 되는 관계회사의 범위는 글로벌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제10조(퇴직금 승계)</p> <p>① 임원의 관계회사로의 전출로 인한 퇴직시, 전입회사와 전출회사의 합의로 전출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전입회사에 인(승)계하고 최종회사가 일괄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p> <p>② 승계대상이 되는 관계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한다.</p>	<p>- 글로벌인사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주요 결정주체 변경</p>
<p><신설></p>	<p>제 11 조(중간정산)</p> <p>본 규정의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단, 법령의 개정으로 중간정산 손금 인정 요건이 추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중간정산을 추가로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 50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p> <p>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p>	<p>-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규정 내용 추가</p>
<p>제 11 조(지급제한)</p> <p>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p>	<p>제 12 조(지급제한)</p> <p>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위원회의 결의로 퇴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글로벌인사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주요 결정주체 변경</p>

현행	변경	비고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23일부로 개정한다.	